

벤처기업투자신탁 확약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노을 주식회사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 참여와 관련하여,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이며, 당사가 운용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은 규정 제2조 제20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규정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위 사항에 있어 사실과 다름이 있는 경우 규정 제19조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과 동 확인 의무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12월 일

회사명 :

주소 :

대표이사:

(인)